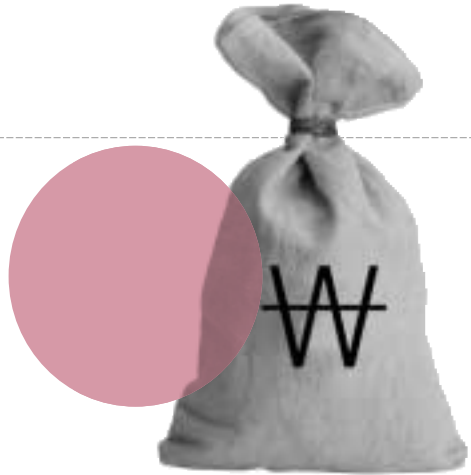


글_에스아이피오

적정자본금과 유·무상증자

심사청구의 사전 준비 (3)



코 스타크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공모 전·후의 목표 자본금을 설정하고 공모 전 자본금의 달성을 위한 방법 및 시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는 상장규정에서 요구하는 상장 전 최소자본금(일반기업 10억원, 벤처기업 5억원) 수준을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모 후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모가와 거래량, 주가탄력성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예상하는 이익수준에 비하여 자본금이 너무 적거나, 최소자본금 수준에 미달한다면 적당한 시기에 유·무상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예비상장신청 시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목표 예비상장신청일의 최소 1년 전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무상증자를 하기 전 점검 사항
회사 자본금의 확충이 필요하여 유·무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방식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주주가 증자 전에 자신이 보유한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주며, 이 경우 제3자 배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참여,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증자, 우리사주조합 증자 등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증자 1년 이후에 예비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유·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내의 기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한 금액이 2년 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말 자본금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자금액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1년까지 예비심사청구가능일이 지연될 수가 있다. 특히,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 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등에게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타 주주의 실권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실무편의를 위하여 타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권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예비심사청구 및 하자의 치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회사가 수년 내에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목표자본금, 달성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유·무상증자 방법에 따라서 예비심사 청구의 시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무사뿐만 아니라 주간사, IPO전문가 등에게 그 방법 및 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에스아이피오(www.s-ipo.co.kr) 02-3775-1518